



##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

[시행 2021. 12. 22.] 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-171호, 2021. 10. 27., 일부개정]

산업통상자원부(생활제품안전과), 043-870-5452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(이하 "안전기준"이라 한다)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안전기준)** ① 제1조에 따른 안전기준은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별로 부속서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속서 1(유아용 섬유제품)
2. 부속서 2(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)
3. 부속서 3(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(보호장구 및 안전모))
4. 부속서 4(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)
5. 부속서 5(아동용 이단침대)
6. 부속서 6(완구)
7. 부속서 7(유아용 삼륜차)
8. 부속서 8(유아용 의자)
9. 부속서 9(어린이용 자전거)
10. <삭 제>
11. 부속서 11(학용품)
12. 부속서 12(보행기)
13. 부속서 13(유모차)
14. 부속서 14(유아용 침대)
15. 부속서 15(어린이용 온열팩(주머니난로 포함))
16. 부속서 16(유아용 캐리어)
17. 부속서 17(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)

③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도 해당 공산품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해사항을 스스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부속서에 규정된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 제조업자명, 모델명 등은 한글로 표시가 곤란할 경우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**제3조(안전기준의 해석)** ① 이 고시에 의한 안전기준의 해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자는 서면으로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3조의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4조(재검토기한)**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부칙** <제2021-171호,2021.10.27.>

**제1조**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